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발 의 자 : 김용연·이병도·김화숙·
봉양순·이정인·최기찬·
이영실·김혜련·오현정·
김동식·서윤기·김소양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이 추가 되고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조문의 순서를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)
- 나.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.(안 제10조제3항 제7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발달장애인”을 “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,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
7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
8.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

제10조제3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
사업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</u> 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6. <u>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</u></p> <p>7. <u>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</u></p> <p>8. <u>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9. 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· ② (생략)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~ 10. (생략) 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</u> 8. ~ 11. (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